

신문 또는 잡지의 기사가 전체로서는 진실하여 반드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 표제(제목)가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줄 경우에 표제만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할 것인가? 신문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목만을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의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재되어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 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 행위 자체가 본문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대판 1998. 10. 27. 98다24624).

III. 위법성 조각 사유 (= 피고의 항변)

1. 명예훼손 특유의 위법성 조각사유

언론 사건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중심으로 피고의 항변이 진행된다.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와 판례와 학설이 위 요건에 추가하여 인정하는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그것이다.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판 1988. 10. 11. 85다카29),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다(대판 1998. 5. 8. 97다34563).

2. 공공성의 요건

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명예 훼손의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8. 7. 14. 96다17257 등).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므로 그 범위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작은 사회에 관한 사실을 그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공표할 때에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대판 1997. 4. 11. 97도88판결, 대판 1989. 2. 14. 88도899).

‘오로지’라는 요건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사익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하여 사익의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된다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나. 보도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1) 보도의 진실성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보도 내용은 실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 내용이 지엽 말단적인 부분이나 사소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진실을 알 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의무와 확인 절차를 모두 거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88. 10. 11. 85다카29, 대판 1997. 9. 30. 97다24207). 그 판단 시점은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후에 드러난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도 참고하여야 한다(대판 1996. 8. 20. 94다29928).

IV. 본안소송에서의 구제수단 {손해배상 +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정정보도)}

1. 손해배상

가. 재산상 손해

언론 사건에서도 재산상 손해는 일반 민사 사건에서와 같이 언론 보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의 손해에 한정된다.